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82
----------	------

2022년 3월 29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2년 3월 29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서윤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33조제2항 신설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¹⁾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,
- 현행 과태료 규정이 행정청의 부과·징수 권한만 명기하고 있을 뿐 이해당사자의 법적 이의제기 권한은 명기하고 있지 않아 자칫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※ “인권”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 (인권조례 제2조)

■ 서울시 인권영향 평가 추진 현황

-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‘서울시 인권 기본조례’를 제정하고, 2013년 ‘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(2013~2017)’과 2017년 ‘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(2018~2022)’을 수립하는 등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인권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1) 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이에 2018년 ‘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’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9년 서울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(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)를 실시하였으며,

[표]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(서울시 인권위원회)

평가분야	평가항목
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	1)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
	2)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
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	3)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
	4)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
	5)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)
	6)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 징수 법적 근거, 구제절차)
시민참여 보장	7) 개인정보보호권 보장
	8)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
	9) 시민의 공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- 그 결과, 2020.4.2.일 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62개 자치법규의 96개 해당조항을 선정하여 개정을 권고하였음.([붙임2] 참조)

※ 서울시 인권위원회 업무(인권조례 제14조)

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2.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4.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
5. 그 밖에 시장,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·자문
6. 제17조제2항(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,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)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

■ 과태료에 대한 ‘이의신청’ 조항 신설 관련 의견(안 제33조제2항)

- 안 제33조제2항은 현행 조례 제33조에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2조 제1항2)에 근거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

[표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4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사람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

- 이는 과태료 벌칙에 대한 행정청의 부과·징수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법적 이의신청 권한을 병기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며, 결과적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- 2) 제8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 - ※ 제73조(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 - ※ 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(생략)
 -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,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~ ⑧ (생략)

- 다만, 본 개정안이 사용하고 있는 ‘이의신청’이라는 용어를 법적 용어 측면에서 살펴보면, 관계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‘이의제기³⁾’와 ‘이의신청⁴⁾’을 규정하고 있음.
- 즉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‘이의제기’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같은 법 제45조(이의신청)에서는 당사자와 검사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‘이의신청’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, 본 개정안의 취지상 ‘이의신청’이 아닌 ‘이의제기’가 적합한 용어로 사료되는 바, 개정안의 ‘이의신청은’을 ‘이의제기는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3) 「**질서위반행위규제법**」 제20조(이의제기)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

4) 「**질서위반행위규제법**」 제45조(이의신청)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[표 3] 안 제4조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3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 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</p> <p>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사람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이의제기는 ----- -----.</p>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상위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45조 (이의신청)에 따르면 ‘이의신청’이라는 용어는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한 ‘이의제기’로 수정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8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2년 3월 29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‘이의제기’와 ‘이의신청’을 규정하고 있는데, ‘이의신청’은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이며 ‘이의제기’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‘이의신청은’을 ‘이의제기는’으로 함 (안 제33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3조제2항 중 ‘이의신청은’을 ‘이의제기는’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3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사람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이의제 기는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 제목“(과태료)”를“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</u> <u>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</u> <u>법」에 따른다.</u></p>